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회)	

수산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해양수산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강원 연안의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규모가 큰 근해 어선의 조업 제한이 필요하고, 조업방식이 다른 자망과 통발어선 간 분쟁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어업의 종류별 어구사용의 금지구역 및 기간에 ‘대게’의 금지기간을 추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어업의 종류별 어구사용의 금지구역 및 기간 정비(안 별표7)

강원 연안 내 근해통발 대게조업 연중 금지를 위해, 근해장어통발어업, 근해통발어업의 어구사용 금지기간에 ‘대게’의 금지기간을 추가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0. . ~ 2023. 11. 예정)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7을 제1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어업의 종류		금지사항	금지기간	사용 금지구역
사.	1) 근해장어 통발어업 2) 근해통발 어업	게를 포획할 목 적으로 통발 사 용 금지	5월1일부터 7월31 일까지, 10월31일 부터 12월31일까지 다만, 대게를 포획 하는 경우에는 10 월3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주10)의 해역
		대게포획 금지, 대 게류·붉은대 게류 통발 사용 금지	연중	주11)의 해역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7] 어업의 종류별 어구사용의 금지구역 및 기간(제38조의제2항 관련)					[별표7] 어업의 종류별 어구사용의 금지구역 및 기간(제38조의제2항 관련)				
1. 근해어업					1. 근해어업				
어업의 종류		금지사항	금지기간	사용 금지구역	어업의 종류		금지사항	금지기간	사용 금지구역
사.	1) 근해장어 통발어업 2) 근해통발어업	게를 포획할 목적으로 통발 사용 금지	5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10월31일부터 12월31일까지	주10)의 해역	사.	1) 근해장어 통발어업 2) 근해통발어업	게를 포획할 목적으로 통발 사용 금지	5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10월31일부터 12월31일까지 <u>다만, 대게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10월31일부터 다음해 4월 30일까지</u>	주10)의 해역
		(생략)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연 락 처	(044) 200 - 5519